

**「대·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 
조문별 제·개정이유서**

1. 「대·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(안 제5조)

가. 개정 이유

- 불공정거래 수탁·위탁거래 방지를 위해 표준약정서 제정·개정의 근거 등을 마련하는 내용으로 「대·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」이 개정(‘24.11.1. 시행)됨에 따라 관련 하위법령의 조문 정비

나. 개정 내용

- (삭제) 제5조(표준약정서의 고시)
  - 해당 조항 내용을 법령 및 같은 법 시행령으로 규정함에 따라 삭제 필요

현 행	개 정 안
제5조(표준약정서의 고시) 중소기업부 장관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위탁기업의 수탁기업에 대한 약정서의 교부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탁에 관한 표준약정서를 정하여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.	<삭 제>

다. 입법 추진 과정에서 논의된 주요 내용

- 특이사항 없음

라. 입법효과

- 특이사항 없음

마. 그 밖의 참고사항

- 없음